

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2.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9호로 2013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식품
접객업) 영업장 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3호)
-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안을 마련함.
(제9조제2항 안 별표 2)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안을 마련함.(제9조제2항 안 별표 2)
- 본 개정안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이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부과되어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비용을 느끼지 못해 배출량 감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012년 10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83%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종량제 전국시행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본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부과기준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주민부담률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나. 예산조치 : 사업시행 시 반영

다. 타구 개정 현황 :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시행일 : 2013.6.2] 제14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2012.7.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